

조문 별 제·개정 이유서

◇ 행정규칙명

-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운영규정

◇ 제 · 개정 이유

- 위원회 개최 시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는 경우와 의결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

◇ 주요내용

- 가.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서면심의할 수 있는 경우 및 의결방법 등을 명확히 함(안 제6조제4항 및 제9조제5항)